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

2021. 9.



고용서비스정책관실
Employment Service Policy Bureau

순 서

< 시행령 개정 >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안 제12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 1
2.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명확화
(안 제3조, 제19조의3) 3
3. 노무제공플랫폼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 등 규정
(안 제19조의3, 제56조의7) 7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12

1. 현황

-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보험료는 사업주·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율의 2분의1씩 부담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와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동일함

2. 개선 필요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직급여*, 기업의 고용유지, 청년 등 고용 창출을 위한 지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

* 구직급여 지원(만명, %): ('18) 139(9.3) → ('19) 153(9.7) → ('20) 178(16.9)

구직급여 지급액(조원, %): ('18) 6.7(27.6) → ('19) 8.4(25.4) → ('20) 142.2(45.3)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 '21년말 적립금이 '20년 대비 크게 감소(△2조원)하여 4.6조 수준 예상

-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고갈 방지 등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필요

-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과 함께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노사 부담을 최대한 완화*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2%p 인상, 시행시기 '22.7.1.(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 '21.9.1.)

3. 개선 내용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2%p 인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보험료율 0.1%p 부담

* 근로자 1.6% → 1.8%, 예술인·노무제공자 1.4% → 1.6%

4. 시행일 : '22.7.1.

5.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u>16</u></p> <p>② ~ ④ (생략)</p>	<p>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18</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생략)</p> <p>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u>14</u>로 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6</u> <u>으로</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② (생략)</p> <p>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u>14</u>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16</u> <u>으로</u>-----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명확화 [안 제3조, 제19조의3]

1. 현황

- 근로자의 경우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이 곤란할 때' 기준보수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①보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②월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단기·소득합산자는 제외) 기준보수로 적용 (승 제3조제3항, 제4항)
 - * 기준보수: 예술인 80만원, 노무제공자 133만원 / 적용대상: 예술인 5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 예시) 예술인의 월 소득이 50~8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
- 승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6항은 월평균보수의 하한액 (기준보수를 말함)과 하한액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 * 법령 근거 조문: 징수법 제16조의3제2항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본문 단서에서는 노무제공자 중 단기와 소득합산자는 하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각호에서는 단기와 소득합산자를 적용 대상으로 착오 규정하여 혼선 초래

2. 개선 필요성

- 기준보수 관련 규정인 승 제3조에 기준보수 적용 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일원화할 필요

3. 개선 내용

- 제3조제3항(예술인) 및 제4항(노무제공자)에 기준보수 적용 대상자(제외자*)를 규정하고 제19조의3제6항은 삭제
 - * 단기·소득합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제외

4. 시행일 : '22. 1. 1.

5.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② (생략)</p> <p>③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단서 신설></u></p> <p>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p>	<p>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예술인</u>----- ----- ----- ----- <u>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u></p> <p>④ ----- ----- -----</p>

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된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단서 신설>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생략)
⑥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자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을 적용하

1. (현행과 같음)

2. 노무제공자-----

-----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지 않는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
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
하는 금액

⑦ (생략)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
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
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
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
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19조의
3제6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
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
총액으로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의 산정) -----

----- 제3조제3
항제2호에 대하여 적용하는
월단위 기준보수(이하 “월평균
보수의 하한액”이라 한다.)-----

-----.

노무제공플랫폼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 등 규정 [안 제19조의3, 제56조의7]

1.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월 보수액을 매월 신고*

* 징수법 제48조의3제6항: 월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월의 전월에 지급된 보수액'을 말함

-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에 적용('22.1월)됨에 따라
 - 플랫폼 관련 정보(수익배분 등)가 집약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월 보수액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 특례 조항 (법 제48조의4)이 시행

2. 개선 내용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승 제19조의3),
 -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노무제공 사업주의 사업장명, 플랫폼 이용 시작일 등 정보를 제공(승 제56조의7제1항)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각각 산정·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승 제56조의7제2항)

4. 시행일 : '22.1.1.

5. 신규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u>제9호</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p> <p>6. (생략)</p> <p>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u>사업주가</u>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u>사업주가</u>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 및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p>	<p>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제9호</u>, <u>제12호</u> 및 <u>제13호</u>-----</p> <p>6. (현행과 같음)</p> <p>④ ----- ----- <u>사업주</u> 또는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u>(「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u>를 말한다. 이하 같다)----. ---- <u>사업주</u> 또는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u>----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 제104조의13제1항----- ----- ----- ----- -----.</p>

⑤ 제3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⑥ (생략)

⑦ (생략)

<신설>

⑤ -----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⑥ (삭제)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8조의4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관련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시작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3. 노무제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단기노

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노무제공대가)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
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원천공제
하여 이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원천공제하는 고용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별로 산정
한다.

제56조의7 ~ 제56조의11 (생략)

제56조의8 ~ 제56조의12 (현행
제56조의7부터 제56조의11까지
와 같음)

제56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
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
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
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생략)
- 5.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9조의3제7항-----

<p>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p> <p>6. ~ 17의3. (생략)</p> <p><u><신설></u></p> <p>18. ~ 23. (생략)</p> <p><u>제56조의13</u> (생략)</p>	<p>-----</p> <p>--</p> <p>6. ~ 17의3. (현행과 같음)</p> <p><u>17의4. 법 제48조의4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적용 등에 관한 사무</u></p> <p>18. ~ 23. (현행과 같음)</p> <p><u>제56조의14</u> (현행 제56조의13과 같음)</p>
---	--

1.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①월별보험료 납부, ②피보험자격취득 신고, ③월 보수액 통보 등을 기한 내에 하여야 함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대상

<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대상별 확인 내용 >

보험가입자별	확인 사항	확인사항별 신고기한	관련 규정
근로자	① 보험료 납부 ② 피보험자격취득(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 신고	① 해당월 다음달 10일 ② 사유발생 다음달 15일 ③ 해당월 다음달 말일	① 징수법 제16조의7 ② 고보법 제15조 ③ 징수법 제16조의3
예술인	① 보험료 납부 ② 피보험자격취득(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내용확인') 신고		
노무제공자	① 보험료 납부 ② 피보험자격취득(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확인') 신고 ③ 월 보수액 신고		

- '22.1월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외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으로 보험료 지원

2. 개선 내용

- ① 플랫폼을 이용하는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서'(고보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2항 신설 예정)에서 보수 확인(제28조제3항제1호)
- ② 공단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수총액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 등을 기한 내에 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제29조의2제2항)
- ③ 일용근로자 근로제공확인 내용에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추가(근로내용확인신고를 대체 가능)(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
- ④ 보험료 착오 등 지원시 지원금 환수 대상에 지원금 수급자(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제30조제2항)

3.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 ② (생략)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	③ -----	-----	-----
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	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	-----	-----	-----
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	-----	-----
유사 직종·분야 근로자, 예술	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	-----	-----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	-----	-----	-----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2	1. -----	-----	-----
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	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제19조	-----	-----	-----
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	-----	-----
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	-----	-----	-----
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	-----	-----	-----
<u>104조의12제2항</u> 에 따라 제출		-----	-----	-----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	-----	-----
		<u>104조의12제2항</u> ·제104조의1	-----	-----

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2. (생략)

④·⑤ (생략)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한

3제2항-----

--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 사업주 또는 노무
제공플랫폼사업자가 -----

----- 확인신고서(「소득
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
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 한다)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 1. ~ 3. (생략)
-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④·⑤ (생략)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제104조의13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 4.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

③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에게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게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 확
----- 인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금
수급자-----

-----.

③ (현행과 같음)

순 서

< 시행규칙 개정 >

1.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규정(안 제32조의3) 18
2.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신고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의제
(안 제7조제5항) 21
3. 노무제공플랫폼 적용에 따른 관련 서식 등 추가
(안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9 등) 23

1. 현황

- '21년 8월 징수법(제27조3제1항) 개정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도 분할 납부 가능하고,
 - '22.1월 이전에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에도 적용('22.1.1. 시행)
 - * 현행: 1년 이상이 지나 소급하여 성립신고를 한 경우 1년의 기간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신청기한은 독촉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로 규정
- 그 구체적 사항(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2. 개선 필요성 및 내용

- 분할납부 사유 추가로 실효성 등 확보를 위해 분할납부 기간과 신청 기한 등을 개선할 필요
 - (분할납부 기간)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납 기간을 확대 (1년 → 2년)하고,
 - * 건강보험의 분납 규정(분할납부 횟수 24회 이내)과 통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누적된 체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개정 규정 시행 전 지정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분납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 *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16.7.1.~'21.12.31, 5년 6개월), (고용위기지역) 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18.4.5.~'21.12.31, 3년9개월), 목포시·영암군 ('18.5.4~'21.12.31, 3년 8개월)
- ** (부칙안) 개정 규정 시행 전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까지 분납 가능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신고시 보험관계성립신고로 의제 [안 제7조제5항]

1. 현황

-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사용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함
 -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신고(징수법 제11조제1항)
- '22.1월부터는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내용은 보험관계성립신고 내용과 유사*함
 - *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개시일 등을 이용 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징수법 제48조의4제1항)

2. 개선 내용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에 따른 정보가 입수됨으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받을 실익이 적음
 - 이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함

4. 시행일 : '22.1.1.

5. 신규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법 제48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 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u></p>

노무제공플랫폼 적용에 따른 서식 등 추가 [안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9]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 및 방법 등을 관련 조문에 추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리는 원천공제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리는 원천공제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명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명
		2. 피보험자의 이름과 직종		2. 피보험자의 이름과 직종
		3. 보험료 내역		3. 보험료 내역
		4.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4.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신 설>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의9(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동의에 따라 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계약의 사업개

시 또는 사업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노무제공자 직종을 말한다.

제16조의9 (생략)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

제16조의10 (현행 제16조의9와 같음)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

<p>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u>사업주가</u>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p> <p>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p>	<p>-----</p> <p>----- <u>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u> -----</p> <p>-----.</p> <p>제41조(증표) -----</p> <p>-----</p> <p><u>제48조의3제6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u>-----</p> <p>-----</p> <p>-----</p> <p>-----.</p>
---	---

□ 서식 신설 · 개정사항

<신설>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

별지 연번	서 식 명
별지 제19호의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별지 제22호의4(2)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별지 제22호의19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별지 제22호의20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서
별지 제22호의21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
별지 제31호의3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정>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관련 서식 및 공단 도메인 변경에 따른 안내문구 정비 등 기타 정비 필요 서식 개정

별지 연번	서 식 명
별지 제1호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
별지 제2호의2	보험관계성립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3호	건설업 및 별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별지 제4호의2	보험관계 소멸신고/해지신청(예술인,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5호	건설업 및 별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해지신청
별지 제6호	일괄적용 성립신고/승인신청
별지 제7호	일괄적용 해지신청
별지 제8호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
별지 제10호	일괄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 개시·종료 신고서
별지 제11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불승인, 일괄 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별지 제13호의2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14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
별지 제22호의3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별지 제22호의4(1)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예술인용)
별지 제22호의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별지 제22호의8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별지 제22호의11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별지 제22호의12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
별지 제22호의13	월평균보수변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별지 제22호의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예술인·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22호의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예술인·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22호의16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22호의17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18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별지 제23호	보험료신고서
별지 제24호	자진신고 사업장 자진납부서
별지 제25호	자진신고 사업장 분할납부서
별지 제27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통지서
별지 제29호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

별지 제31호의2	보험료지원신청(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34호의2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별지 제34호의3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별지 제35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총당·반환 결정통지서
별지 제35호의2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별지 제35호의3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별지 제37호	자진신고 사업장 납입고지서
별지 제38호의2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별지 제38호의3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별지 제38호의5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별지 제38호의6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별지 제39호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임/해지 신고
별지 제40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별지 제43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신고
별지 제50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별지 제52호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별지 제53호	해외파견자산재보험 가입신청
별지 제55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별지 제56호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신청
별지 제56호의3	중소기업사업주보험관계변경신고
별지 제59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61호의2	자영업자고용보험기준보수(등급)변경신고
별지 제62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별지 제62호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
별지 제65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세 변경신고
별지 제69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http://total.comwel.or.kr)
 [별지 제1호서식]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정>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산재보험 해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주 (본사)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팩스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공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종류 일반대리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대리인(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만 가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위 또는 직책	등록(자격증)번호	
	선임일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	
해임	성명	해임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2. “사업장관리번호” 란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3. “(사업개시번호)” 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4.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또는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5.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 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6. “대리인종류”란에는 일반대리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소속의 대리인을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대리인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해당 대리인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과 단기에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관련된 업무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뒷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신청시 괄호에 체크)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관리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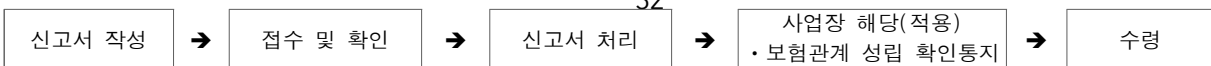
작성방법

공동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자 환급(반환)급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가 해당되며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고용 보험	<p>※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p>※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내에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경우(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사업주 경우에는 환급(반환) 계좌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만 본 서식으로 지원신청 가능) 별지 제31호의2-2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건설업 및 별목업 []고용보험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사업장관리번호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 []없음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사	명칭	사업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현장 (건설공사 및 별목작업)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구분		[]도급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면허번호		계약일		년 월 일	
	건축허가(신고)번호		계약서상 착공일		년 월 일	
	총공사금액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		원	실제 착공일	년 월 일
		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합계액		원	별목재적량	m ³
		발주공사 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별목 상시근로자수	명
	발주자 성명		발주자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입승인 여부	[]승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년 월 일
	[]불승인		산재보험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건설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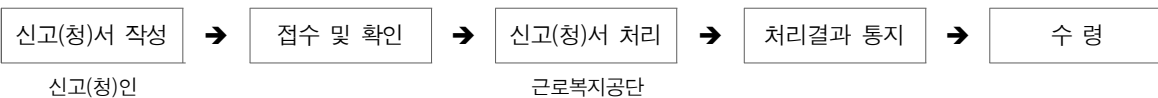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별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부담금 포함)을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별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별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	----	----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우편번호()

신고사유	중복선택불가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통폐합 <input type="checkbox"/> 사업 종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 자격 상실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	--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고용)노무제공자 명	수	(산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	수	소멸일
(고용)예술인 명	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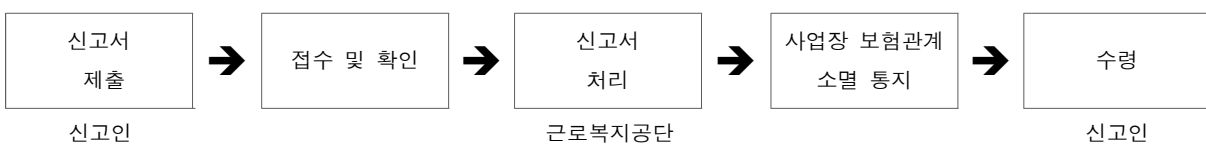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건설업 및 별목업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본사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현장 (건설공사 및 별목작업)	현장명		
	소재지		
	총공사금액	원	공사(사업)기간
	착공(시작)일		준공(완료)일
	고용보험 소멸일		산재보험 소멸일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그 밖의 사유(사유 기재):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관리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청)인 제출서류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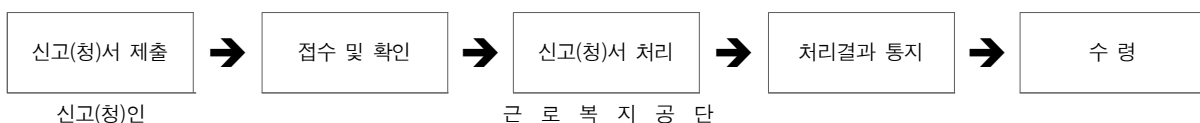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고용보험 소멸일"과 "산재보험 소멸일" 란은 폐업 또는 사업 종료 시에는 그 다음 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승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난을 적지 마십시오).
5.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란은 해당 사유에 "√"로 표시하고 사유가 []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란은 성립 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 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	--	--	--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상호·법인명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종류	(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		

건설업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공사현장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공사금액	
일반사업	사업장관리번호	지점·지사·공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일괄적용 현황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고용업종코드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산재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각 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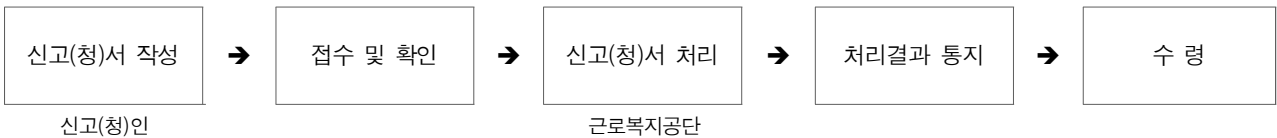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 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지사·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 란에는 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일괄적용 해지신청	해지 사유	
	해지 사유 발생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고·신청인(사업주)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소멸일		고용보험 소멸일	
불승인 사유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일괄적용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해지 사유”와 “해지 사유 발생일”란엔느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를 해지신청하는 경우에 해지사유와 해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원수급인 (신청인)	본사	상호·법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원수급 사업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현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본사	상호·법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고용보험 업종코드				
	하수급 사업	사업장명(현장명)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하수급(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소재지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수	총피보험자 수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		[] 없음 [] 있음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 사항(아래의 난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결정사항	[]승인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년 월 일
불승인 사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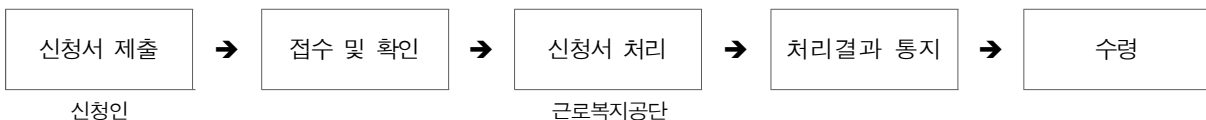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 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 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28.><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 개시 []사업 종료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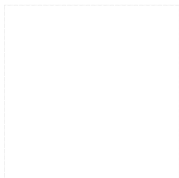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일괄적용 사업	명칭	대표자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전화번호	
건설공사 개시	공사명		
	총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원	발주공사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해당 []비해당	
	발주자명	건설공제 전자카드 가입번호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별목작업 개시	별목 현장명	전화번호	
	현장 소재지		
	별목 재적량	별목기간	
	인원	발주자명	
지점·지사 ·공장 등 개시	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사업 종료	개시번호		
	명칭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별목허가서 사본 1부(별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별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 소: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장	상호·법인명	공사명 또는 유기사업명	
	소재지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 연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대규모 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6조의5제6항제1호·제56조의6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팩스()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 및 신고·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

-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채용(이직) 시 채용(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자격취득(상실/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일용근로자(고용·산재 모두 해당) 또는 단기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단기노무제공자(고용·산재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기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 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항목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	변경내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직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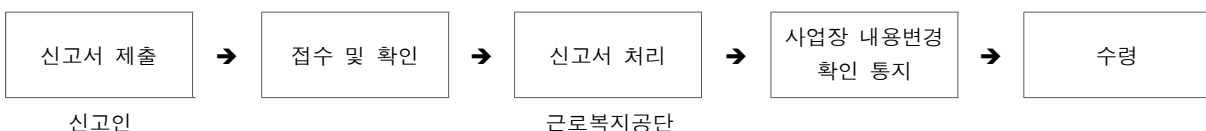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직종" 란에는 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주	상호·법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변경 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총상시근로자수(전년도)	명	명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변경 사유 발생일		총사업장수	
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변경 후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변경적용 개시일	
변경 사유			

첨부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숫자 5자리)를 적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란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4. “변경 사유 발생일”과 “변경 사유”란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 변경 사유 발생일 및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5.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쪽(별지)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7)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8)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업장(9)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년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구분 월별	보수		당월 노무제공사업주수	당월분 노무제공사업주 원천공 제액	당월 피보험자수	당월분 피보험자 보수총액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인원	보수총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 자: 직 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해지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고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전자문서교환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해지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고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홈 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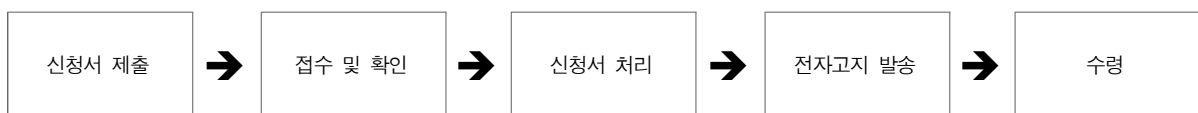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작성 방법

-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 표시를 합니다.
- ”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4(1)서식 <개정>**

[]산재보험 []고용보험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예술인용)

※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②연간 보수총액 (원)	③월평균보수 (원)	취득일	전보일	④종사자 코드	⑤연간 보수총액 (원)	⑥월평균보수 (원)	
⑦일용근로자 등 보수총액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근로자 종사 사업 예술인 종사 사업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⑦_1 고용하 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 (※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⑨합계			② + ⑦ + ⑧ + ⑭			-	근로자 종사 사업(⑤+⑦+⑯) 예술인 종사 사업(⑤)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 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⑩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번 또는 ⑧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의 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취득일	전보일	⑭연간보수총액(원)	⑮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전보일	④근무지코드	⑯연간보수총액(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⑯월평균보수(원)

※ 위 ⑯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부과구분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0	0	x	x	09.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월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0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0	x	0	0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0	0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피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0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26.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58	0	x	x	0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0	0	x	0	27.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2. ②란, ⑤란, ⑭란 및 ⑯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5항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3. ③, ⑥란의 "월평균보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이미 고용·노무제공 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적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 기간·문화예술공연 관련 계약기간·노무제공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4. ④란의 "종사지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본 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⑦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단기에출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⑦-1란의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은 고안직능 당연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임의적용자에 대한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⑧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⑩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정정신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취득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총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총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6조의5제6항제3호·제56조의6제6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총당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의4(2)서식] <신설>

고용보험 ()년도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앞쪽)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월보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액(월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고, "보수총액"에는 연간 총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3.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신고가 누락된 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 또는 노무제공자 리스트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총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총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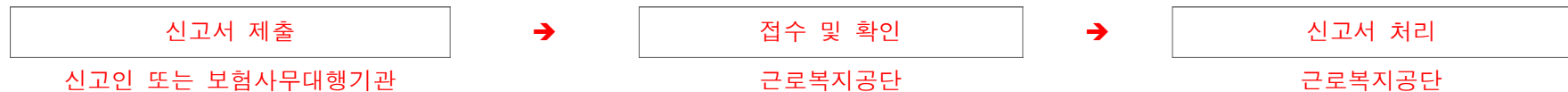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의 []선납 []총당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처리절차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팩스번호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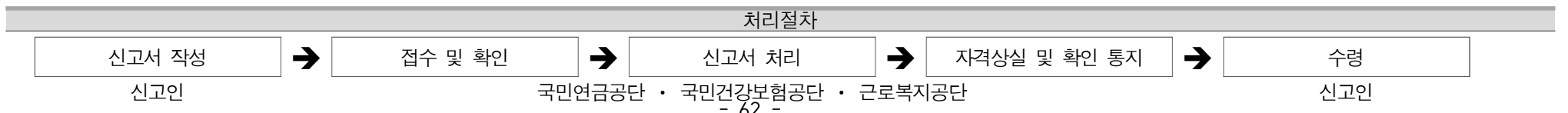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의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에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㉞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0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종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등		휴업·휴직 등 사유
			시작일	종료일	
		-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input type="checkbox"/> 유산·사산 휴가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input type="checkbox"/> 유산·사산 휴가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input type="checkbox"/> 유산·사산 휴가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input type="checkbox"/> 유산·사산 휴가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input type="checkbox"/> 유산·사산 휴가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input type="checkbox"/> 유산·사산 휴가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업·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제외) 판단을 위해 신고를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휴직 등 사유란의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산 재 업 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인(외국인) 등 록 번 호	산 재 보 험 수 정 신 고				고 용 보 험 수 정 신 고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	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⑤일용근로자 등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일용근로자 단기에술인 단가노무제공자				⑤_1.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	--	--	--	--

⑥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	--	--	--	--

※ "자활근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건임자" 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 ⑩번란에 작성합니다.

⑦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보수총액 (원)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제48조의2제8항제2호·제48조의3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⑩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수정대상 근로자만 작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	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위 ⑩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번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 가년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⑩번란에 같이 적습니다.

작성방법

- 수정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가 누락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근로자)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내려 받거나 고용 · 산재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①, ③란의 “연간보수총액” 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등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②, ④번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이미 상실(고용종료)된 종사자의 월평균보수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 노무제공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 ⑤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에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들의 연간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⑤_1란의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보수” 는 고안직능 당연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중 실업급여 임의적용자에 대한 보수를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⑥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⑦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⑧번란의 “매월 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 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년 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월보수액)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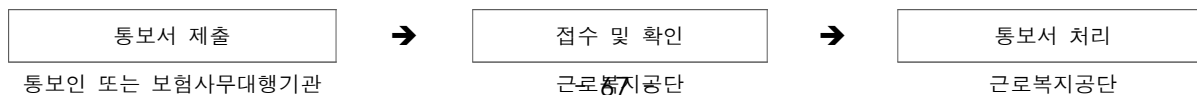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자격취득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 "월평균보수"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22호의13서식]<개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수 변경 월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보수 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변경 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해당 직종자에 한하여 아래 표 * 참조하여 번호 기재	
1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 직종별 추가 입력 번호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① 월 기준 소득·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자전거·지하철 ⑤기타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기계종류	① 불도저 ② 굴삭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안정기 ⑪ 콘크리트빔칭플랜트 ⑫ 콘크리트피니셔 ⑬ 콘크리트살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믹싱플랜트 ⑯ 아스팔트피니셔 ⑰ 아스팔트살포기 ⑱ 골재살포기 ⑲ 쇄석기 ⑳ 공기압축기 ㉑ 천공기 ㉒ 향타 및 향발기 ㉓ 자갈채취기 ㉔ 준설선 ㉕ 특수건설기계 ㉖ 타워크레인 ㉗ 콘크리트믹서트럭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04조의12제1항·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제125조의9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 70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의사항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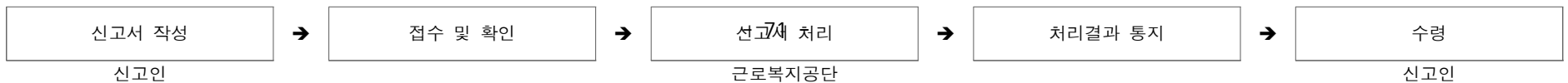
작성 방법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아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작성하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기재합니다. 3.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가입자(노무제공자, 예술인)의 취득 여부에 대해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5.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에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6. 월(평균)보수액란에는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액” (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직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란은 직종이 “방문판매원” 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3. 배송수단란은 직종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4. 건설기계종류란은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앞쪽 하단에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만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직종 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2 건설기계조종사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957 퀵서비스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58 대리운전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59 골프장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960 소프트웨어기술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처리 절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예술인)
[] 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상실일	상실 코드	상실사유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일	휴대전화번호	이직사유[√]	
						보수총액		월보수액				공통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만 작성
						해당 연도	전년도	해당 월	전월				
1												[]계약종료 []사업의 폐업·휴 []기타()	[]전속성 없음
2												[]계약종료 []사업의 폐업·휴 []기타()	[]전속성 없음
3												[]계약종료 []사업의 폐업·휴 []기타()	[]전속성 없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04조의12제1항·제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2호·제125조의9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상실·이직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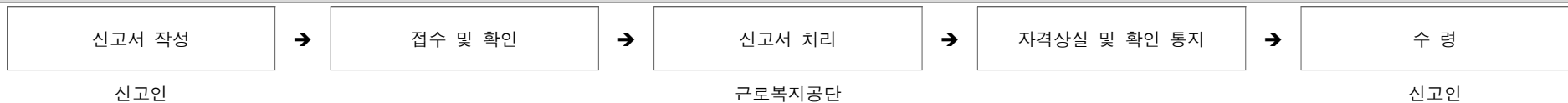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p>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p> <p>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작성하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기재합니다.</p> <p>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p> <p>※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p> <p>【상실(이직)사유 코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p>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p> <p>6. “노무제공자 월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적습니다.</p> <p>※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p> </div>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직일”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2. “이직사유”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에 “√” 표시를 합니다. 3. 전속성이 없는 토크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전속성 없음”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 ([]단기 예술인)
인신고서 ([]단기 노무제공자) (년 월년)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하수급안번호는 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안만 해당함)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직종 부호																					
산재	건설기계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노무제공일수 ("o" 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제104조의1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에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과고지사업장 종사자에 한함)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 서식인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기재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의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기재합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에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단기에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직종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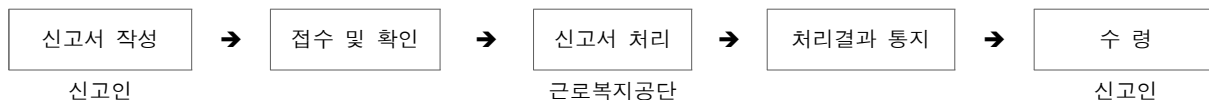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외 소속)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7 퀵서비스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4 택배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8 대리운전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삭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 절차



고용보험 ([]에술인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일련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 등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5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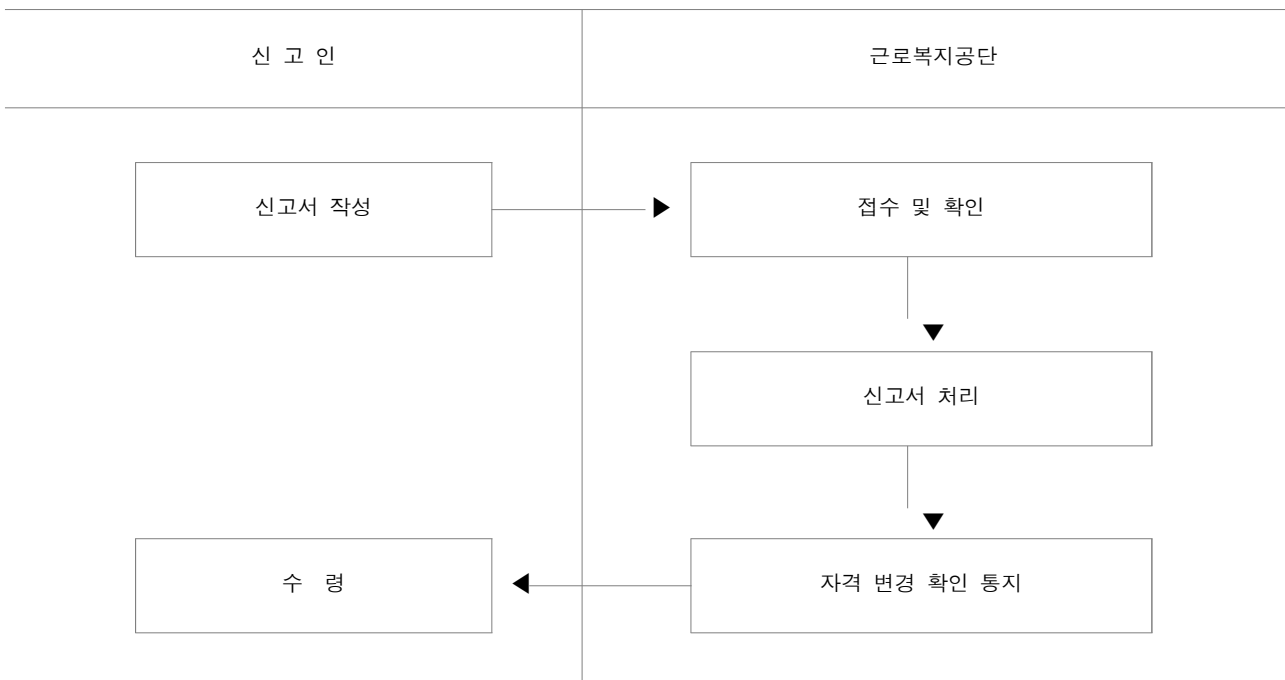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4. 휴업 시작일의 정정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 시작일, 휴업 종료일 등의 변경은 별도 서식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
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용 사업장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2. 휴업 등 사유란의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노무제공 플랫폼사업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E-mail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종류	노무제공자 [] 퀵서비스기사 직종 [] 음식배달 []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	

주된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고용업종코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업주)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 년 월 일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 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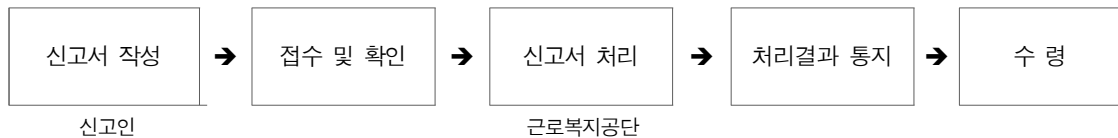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노무제공플랫폼이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2. 위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의무자는 사업의 소재지, 사업주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의무자는 위 신고서와 별도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 체결 시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각각의 이용사업주에 대한 사업개시·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고의무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및 피보험자격취득·상실·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수를 적습니다.
2. “주된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http://total.comwel.or.kr)에서
 를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호서식] <신설> 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	
1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2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3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4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5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6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7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8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9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10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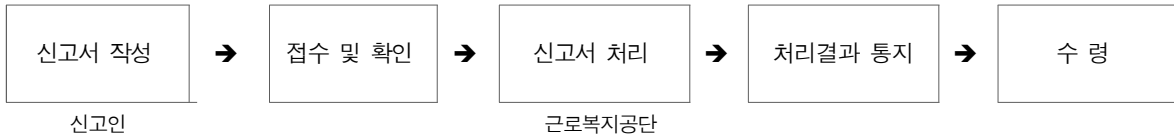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별지 제22호의19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제출 시 기재한 노무제공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 시 직종을 퀵서비스 기사로 신고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업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의무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2호의21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를 노무제공이용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란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노무제공자 수"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수를 적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일"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1서식] <신설>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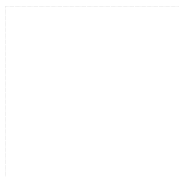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	
1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2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3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4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5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위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란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사업장명"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용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사업종료일"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을 종료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정>

()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신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년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개산보험료액		⑥추가납부할 금액(③-④)	⑦초과액(⑤-③)	
						④신고액	⑤납부액		총당액	반환액
확정보험료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1,000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1,000						
	계									

()년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		/1,000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1,000		
	계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근로자 감소 []휴업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귀사에서 내야 할 제년도제기 고용·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받는 사람: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이번 년 기 금액제외, 기금으로 연체금 포함) ●각 사업별 보험료 명세	고용보험료 납부서 검 영수증 (납부사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실업급여 :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안내 말씀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관리번호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분납구분: 제 기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금액 원	*분납구분: 제 기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분납구분: 제 기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산재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이번 년 기 금액제외, 기금으로 연체금 포함) § 안내 말씀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검 영수증 (납부사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분납구분: 제 기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금액 원	*분납구분: 제 기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분납구분: 제 기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보수적용 기준	[]실보수 []기준보수
---------	----------------

보험료 감액 명세						
구분		산정기간	보수총액	신고한(부과된) 보험료액	감액 후 보험료액	감액 보험료액
고용 보험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					
산재보험 (부담금 등 포함)						
계						

감액 사유	[]보험료율의 인하 []사업규모의 축소 []그 밖의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6조의5제6항제2호·제56조의6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팩스()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선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감액조정신청사유						
구 분	⑥ 산정기간	⑦ 보수총액	⑧ 보험료율	⑨ 개선보험료	⑩ 감액보험료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	⑪기 신고액		/1,000		(⑪-⑫)	
	⑫ 조정신청액		/1,000			
감액보험료 총계		-	-	-		
고 용 보 험	실업급여	⑬기 신고액		/1,000	(⑬-⑭)	
		⑭ 조정신청액		/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	⑮기 신고액		/1,000		(⑮-⑯)
		⑯ 조정신청액		/1,000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추정명세			고용보험 보수총액 추정명세			
월 별	⑰ 인 원	⑱ 보수총액	월 별	⑲ 인 원	⑳ 보수총액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계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선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선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선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신청 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⑤ 감액신청 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⑪,⑬,⑮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선보험료 산정명세를 적습니다.
4. ⑫,⑭,⑯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보수액과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5. 보수총액 추정명세(⑰~⑳)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보수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로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고용·신재보험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제31호의2(1)서식] <개정 2022. 1. 1.>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명
지원 대상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예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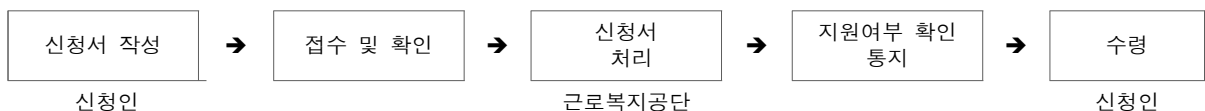
유 의 사 항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사업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 사업주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내에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기카**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제31호의2(2)서식] <신설 2022. 1. 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3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노무제공사업 사업주·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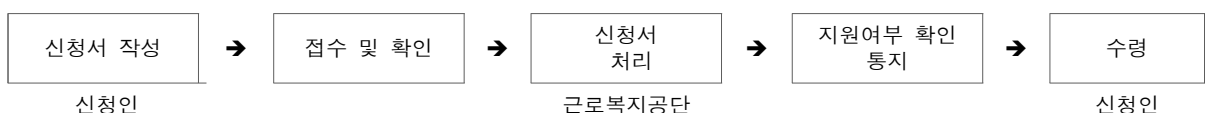
유 의 사 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사업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대상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보수액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무제공자 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매월 기한내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고,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는 지원받을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공단에 각각 지원 신청 하여야 하며, 최초 1회 지원신청으로 공단이 매월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에 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란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고용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산재보험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구분	보험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신청 금액	경감 후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경감신청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2. “경감신청 사유” 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관련 증명 서류” 란에는 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총당 · 반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명				성립일

과납액 · 보험급여(총당 · 반환해야 할 금액)

연도/분기 (월)	보험별	종목 (급여종류)	과납 발생일 (보험급여 지급일)	과납액 (보험급여)	이자금액	합계

총 당 내 용

총당 사업장관리번호	연도/분기 (월)	종목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

반 환 내 용

연도/분기(월)	종목	결정일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

반환금 지급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 제56조의5제6항제3호 · 제56조의6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원)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원)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반환신청 사유	[] 사업주의 사망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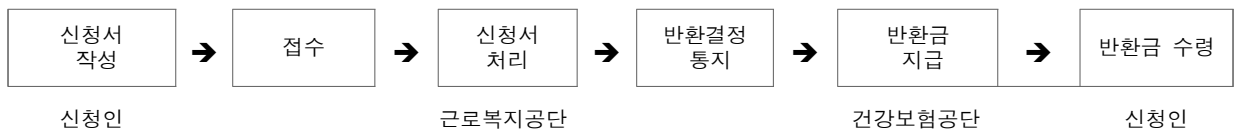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

작성방법

1.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반환내용

연도/분기(월)	발생일	결정일	과오납액 (A)	이자금액 (B)	반환금액 (A+B)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차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삭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 사유가 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군·구청,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사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 훈고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의 총액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원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소:
 받는 사람: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검 영수증(납부사용)	바코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년도</th> <th>구분</th> <th>분기</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body> </table> <p>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년도</th> <th>구분</th> <th>분기</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body> </table> <p>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의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p>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p>전자납부번호</p> <p>0000-0000-00-0-0-0000000</p> <p>보험관리번호:</p> <p>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수입징수관계좌</td> <td style="width: 50px;"></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 style="text-align: right;">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able> <p>위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담당자: 수납인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p>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p>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p> <p>*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p>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p>전자납부번호</p> <p>0000-0000-00-0-0-0000000</p>	<p>바코드</p>						
<p>보험관리번호:</p> <p>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수입징수관계좌</td> <td style="width: 50px;"></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 style="text-align: right;">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able> <p>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담당자: 수납인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p>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검 영수증(납부사용)	바코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년도</th> <th>구분</th> <th>분기</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body> </table> <p>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년도</th> <th>구분</th> <th>분기</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r> <td>00</td> <td>0000000000</td> <td>00</td> <td>0000000000원</td> </tr> </tbody> </table> <p>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의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p>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p>전자납부번호</p> <p>0000-0000-00-0-0-0000000</p> <p>보험관리번호:</p> <p>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삭면피해구제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수입징수관계좌</td> <td style="width: 50px;"></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 style="text-align: right;">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able> <p>위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담당자: 수납인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p>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p>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p> <p>*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p>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p>전자납부번호</p> <p>0000-0000-00-0-0-0000000</p>	<p>바코드</p>						
<p>보험관리번호:</p> <p>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삭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수입징수관계좌</td> <td style="width: 50px;"></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 style="text-align: right;">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able> <p>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담당자: 수납인 전화번호: 발행일(발송일):</p>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연도	기(월)분	징수금 종류	금액	당초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제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팩스()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③대표자	
	②상호·법인 명칭		전화번호	팩스
	④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채납액내역	⑤채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분할납부 신청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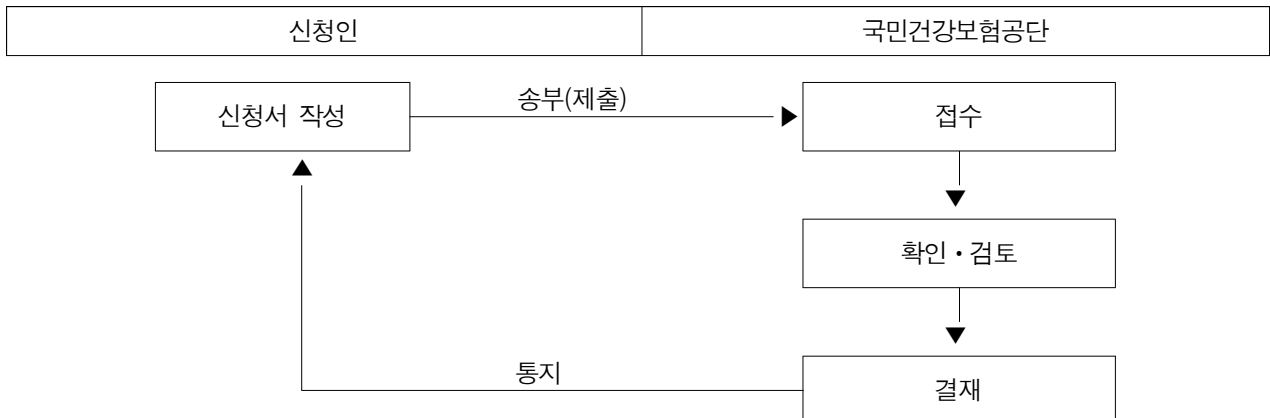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 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라.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바.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2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 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분할납부금액은 고지월별 체납보험료(자진신고 대상은 월 환산액) 이상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 및 금액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 등의 종류	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및 분담금 포함)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	--	-----------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분할납부 승인취소 사유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보험 사무 대행 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고용보험 인가일	산재보험 인가일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구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종류	근로자수 예수인수 노무제공자수	수임(해 지) 연월일	해지사유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가 많은 경우 뒤쪽에 계속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수입(또는 수입해지) 명세

구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종류	근로자수 예술인수 노무제공자수	수입(해지) 연월일	해지사유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무 시작 예정일
	설립근거		기관 구성원수
	보험사무 내용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에 관한 사무	
직무경력 (공인노무사, 세무사에 한함)	직무개시등록일자 (세무사등록일자)		직무수행기간 ~
	인가교육 이수여부 (세무사에 한함)	[] 이수 [] 미이수	인가교육 이수일자 (세무사에 한함)
수입 관련 사항	수입 예정 사업장수		예상되는 대상 근로자수
	수입 대상 지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대표자"와 "기관" 항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수입관련사항" 중 수입대상지역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소재지와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분포한 지역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신고인)"은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개인사업주)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법인(법인 지점 등)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법」 제13조에 따라 등기된 지배인 성명을 적은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 변경인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신고인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의 내용	변경 후의 내용
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인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명세

①총신청액	②징수사무대행지원금	③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④적용촉진장려금
원	원	원	원

징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명세	산정 명세		금액
			원

피보험자관 리등대행지 원금 신청 명세	피보험 자격취득신 고 등	산정 명세		금액
		계		원
		()분기		
	()분기			
		보수총액신고		원
		계	원	

적용촉진장려금 신청 명세	산정 명세		금액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수수료 없음
------	-----------------------------	-----------

(앞쪽)

제 호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근로복지공단

60mm × 90mm(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제48조의3제6항제4호·**제48조의4 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사업주)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해 외 파 견 (예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가 입 신 청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 해외파견(예정)자 인원이 많은 경우 제2쪽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해외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유의사항

1. 보험가입 승인요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2.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해외파견(예정)자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 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람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란에는 보험가입신청을 하는 해외파견(예정)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해 외 파 견 (예정)자 가 입 신 청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월평균(예상)보수액	
업무내용		※ 성립일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신청인 (사업주)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해외파견 자 보험관 계 변경사 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해외파견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제외)
2. 해외파견사업장의 파견국가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해외파견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소재지의 변경은 승인된 해외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중소기업 사업주 □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자 사용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	---------------------------------	----------------------------------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7일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자녀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4촌 이내의 친족 ()	
보험가입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등급(원)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여부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납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 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퀵서비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의사항

1.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가족종사자란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은 제외됩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쿠팡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쿠팡서비스업자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적용이 제외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7.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가족종사자’란은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6.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에 “√” 표시를 합니다.
8.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 특정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특정업무에 최초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특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업무 종사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또는 법인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근로자 수		
	특정업무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납 업무 <input type="checkbox"/>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납 업무 <input type="checkbox"/>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그 밖의 사항		
	변경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관계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건강진단서 1부(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 발송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작성방법

1.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 란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습니다.
3. ‘변경사항’ 란에는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 란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전자우편주소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물)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원)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아니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⑨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⑩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로자 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란과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용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란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자영업자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현행		변경	
기준보수 신고 등급 및 보수액		()년도 기준보수액	
등급	(원)	등급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	
등급	기준보수액

유의사항

1. 신고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작성방법

1. 자영업자 관리번호란은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자영업자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 등록번호'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근로자수'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업		휴대전화번호
			시작일	종료일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부상·질병 [] 임신·출산 [] 육아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기타()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부상·질병 [] 임신·출산 [] 육아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기타()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부상·질병 [] 임신·출산 [] 육아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기타()					
		-			
적용제외사유 (1개월 이상 휴업에 한함)					
[] 부상·질병 [] 임신·출산 [] 육아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 하

첨부서류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부상·질병 또는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상·질병 또는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된 후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공단에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내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2. 휴업 사유란의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제외사유 소멸일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인([]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산재보험관계 변경 명세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명세변경부호]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휴업시작일 4. 휴업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명세 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사업주 또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부상·질병 또는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산재보험 관리기구	명칭	산재보험관리기구 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명세

총신청액				원
지원금 신청 명세	신청분기			납부기한내 납부 보험료 총액
	20 년 ()분기			원

지원금 신청 세부 명세

구분	신청분기 해당 월			
	합계	()월	()월	()월
부과 보험료액	원	원	원	원
납부기한내 납부액	원	원	원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재보험관리기구(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